

윤리행동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이센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체계 정착 및 기업투명성 확보를 회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윤리행동규정의 점검과 해석)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성원의 윤리

제4조(법령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① 구성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사업목표 등을 공감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

② 구성원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시나 강요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제5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① 구성원은 거래처(협력업체, 공급업체 등,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향응, 접대, 선물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적 이득을 제공받거나 암시 또는 요구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은 회사 행사 시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후원 또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개인적 경조사에 대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회사 업무 관련 거래처에 알리지 않는다.

④ 구성원은 회사 업무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부정한 금전대차 및 청탁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 구성원으로 취업, 가족/지인 등의 부당한 취업 청탁, 부당한 거래알선 및 청탁, 금전대차, 담보제공, 거래처의 주식 취득, 공동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⑤ 구성원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⑥ 구성원은 회사 구성원 상호간에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6조(이해상충 방지) ①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② 구성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또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거래처에 대해 본인,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는다.

④ 구성원은 본인 또는 지인의 다단계판매, 보험 등을 구성원 및 거래업체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회사자산 보호 및 예산사용) ① 구성원은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회사의 유형자산(각종기기, 시스템, 설비, 비품 등)을 회사 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구성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⑤ 구성원이 재직기간 중 개발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격/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 귀속되며,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식재산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PC, 이동식 저장매체, 서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회사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회사 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 ①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및 고객 관련 정보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 승인된 것 이외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발표, 유출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은 고객 및 다른 구성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않으며, 합법적인 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① 구성원은 회사 내 외부를 막론하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구성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① 구성원은 회사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구성원은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 ③ 구성원은 업무수행 상 본인의 실수나 비위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해 업무 관련 정보를 왜곡, 날조하지 않고 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하며, 관련된 자료 일체를 무단 훼손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 ④ 구성원은 본인의 상급자, 하급자, 동료 직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 과장, 헐담하거나, 회사 관련 정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제11조(윤리행동규정의 준수) ① 구성원은 입사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윤리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윤리행동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임원과 직책보유자들은 해당 소속 직원의 윤리행동규정 준수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전사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윤리행동규정 감독, 교육, 처리를 주관한다.
- ③ 구성원이 윤리행동규정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강요받을 경우, 지체 없이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제보하여야 한다.
- ④ 윤리행동규정 위반 행위 제보의 유형
 1. 외부 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 향응, 접대, 선물 등의 수수 또는 요구행위
 2.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부당한 금전거래 행위
 3. 회사 유무형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유출 행위
 4. 승진, 채용, 전보, 이종취업 등 인사관련 비위 행위
 5.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
 6. 기타 윤리행동규정 및 법령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
- ⑤ 구성원의 윤리행동규정 위반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합리적 절차와 객관성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윤리행동규정 위반행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고객, 주주, 협력 및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 존중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만족과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과 성장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④ 회사는 고객과 약속한 물품 인도일 혹은 납기일 준수를 항상 유념하고 영업 및 생산활동을 진

행하고, 외상매입금의 경우 지급기한을 준수한다.

제13조(주주 및 투자자 보호) ①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회계기록체
계 유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 실현을 경주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
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
극적으로 반영한다.

③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를 투명하게 작성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협력업체와 경쟁업체 존중) ① 회사는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
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협력업체의 물적,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③ 회사는 공급자 선정에 있어, 조건을 구비한 모든 선정 희망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특정 업체의 재화나 용역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 정
당하게 경쟁한다.

⑤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제15조(국내외 법령의 준수) ①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 컴플라이언
스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회사는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 ① 회사는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납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
제발전에 기여한다.